

수입신고 제출서류 「포장명세서」 심사강화 계획 안내

(’21.4월, 인천본부세관)

1. 배 경

- ☐ 관세사의 수입검사 준비·참여 완화 등 검사절차 개선(’21.3.24)에 따라 세관에서 수입검사 준비를 보세창고 등에 전산 통보
 - 그러나, 제출된 포장명세서가 박스별 품명·수량이 부실 기재되어, 세관의 검사대상박스 통보와 보세창고의 검사준비에 차질 발생
- ☐ 특히, 일부 LCL화물은 1건의 B/L로 수입되는 화물종류가 다양하여, 부실한 포장명세서 제출시 수입검사에 많은 시간 소요
 - * 1건의 수입검사 지체시, 후속 검사건 전체가 지연되는 문제 발생

2. 주요 개선 사항

- ☐ 관련근거
 - 관세법 제2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0조 (수입신고 제출서류)
 -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(수입신고 제출서류)
 - 제1항제4호 : 포장박스별 품명(규격)·수량을 기재한 포장명세서
- ☐ 관세사(신고인) 확인사항
 - 관세사 등 신고인은 수입신고를 위해 화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포장명세서가 위 고시에 부합*하는지 확인 후 수입신고
 - * Shipping Mark와 박스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, **수입신고 ‘란-행’ 별로 검사 대상물품이 내장된 포장 박스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**
 - 부합하지 않는 경우, 화주 등으로부터 포장명세서를 재요청 또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을 통해 고시에 부합하는 포장명세서 제출
 - ※ 관세사 등은 화주, 포워더 등 물류공급망에 적극 안내토록 조치(협조)
- ☐ 적용대상 : 인천항(신항 포함)으로 반입되는 일반해상화물

3. 시행 계획

- ☐ 단계별 시행 : 준비·계도기간(~’21.5.16) ⇨ **수입검사건 시행 (5.17~)** ⇨ **서류제출건까지 전면 시행(7.1~)**
- ☐ 부실한 포장명세서 제출시 전자문서로 서류보완 요구(고시 제25조)
 - ※ (참고1) 포장명세서 작성 사례 // (참고2) 질의 응답(Q&A)

참고1

포장명세서 작성 사례 [正 · 誤 예시]

[사례1] 수입신고 란별 박스번호 미표시

가. (수입신고) 수입신고 2란 중 1란만 검사지정

(란번호/총란수)	(1/2) - 검사지정		총 포장갯수	5CT
품명	PLASTIC BAGS			
거래품명	HAND BAGS			
모델 · 규격	성분	수량	단가(USD)	금액(USD)
BAGS	PLASTIC 100%	300EA	10	1,000
(란번호/총란수)	(2/2) - 검사생략			
품명	CARDIGAN			
거래품명	CARDIGAN			
모델 · 규격	성분	수량	단가(USD)	금액(USD)
CARDIGAN	POLY 100%	100EA	20	3,000

나. (포장명세서) ‘란’별로 박스 번호가 표시되어야 함
PACKING LIST

① Seller			⑧ Invoice No. and date		
<기재 생략>					
⑪Shipping Marks	⑫ N o of Box	⑬ Goods description	⑭Quantity or weight(kg)	⑮ Gross Weight	⑰Measure ment(cbm)
AB	1~5	BAGS & CARDIGANS	400 EA	125.5KG	4

[誤] ‘란’ 별 박스번호 미표시 ⇒ 검사대상박스 특정불가 ⇒ 보완필요

보완 後

⑪Shipping Marks	⑫ N o of Box	⑬ Goods description	⑭Quantity or weight(kg)	⑮ Gross Weight	⑰Measure ment(cbm)
AB	1	BAGS (PLASTIC 100%)	100 EA	31.5KG	1
	2	BAGS (PLASTIC 100%)	90 EA	33.5KG	1
	3	BAGS (PLASTIC 100%)	110 EA	29.5KG	1
AB	4	CARDIGANS (POLY 100%)	40 EA	13.5KG	0.5
	5	CARDIGANS (POLY 100%)	60 EA	17.5KG	0.5

[正] ‘란’ 별 박스번호 표시 ⇒ 검사대상박스 특정가능 ⇒ 수입통관 진행

※ 포장명세서는 포장박스별로 작성하되, 박스별 품명, 규격, 수량이 동일한 경우
“AB 1~3 BAGS 300EA”, “AB 4~5 CARDIGANS 100EA” 등으로 기재 가능

[사례2] 수입신고 모델·규격별 박스번호 미표시

가. (수입신고) 수입신고 1란에 모델·규격이 2개 이상

(란번호/총란수)	(1/1) - 검사지정		총 포장갯수	6CT
품명	RAIN BOOTS			
거래품명	RAIN SHOES			
모델·규격	성분	수량	단가(USD)	금액(USD)
MAN, SIZE 280	RUBBER 100%	200 PR	10	2,000
WOMAN, SIZE 240	RUBBER 100%	200 PR	10	2,000
BABY, SIZE 120	RUBBER 100%	100 PR	5	1,000

나. (포장명세서) ‘모델·규격’별로 박스 번호가 표시되어야 함
PACKING LIST

① Seller			⑧ Invoice No. and date		
<기재 생략>					
⑪Shipping Marks	⑫ N o of Box	⑬ Goods description	⑭Quantity or weight(kg)	⑮ Gross Weight	⑰Measure ment(cbm)
RS	1~6	RAIN SHOES (MAN, WOMAN, BABY, RUBBER 100)	500 PR	105KG	6

[誤] ‘모델·규격’ 별 박스번호 미표시 ⇒ 검사대상박스 특정불가 ⇒ 보완필요

보완 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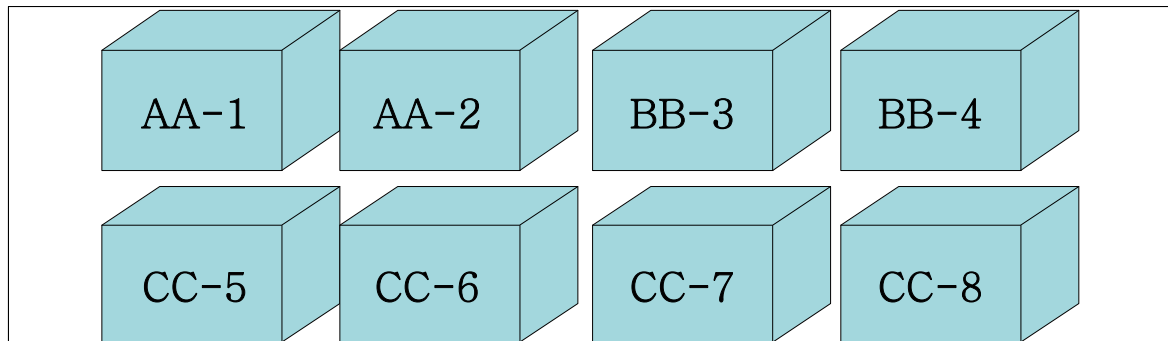
⑪Shipping Marks	⑫ N o of Box	⑬ Goods description	⑭Quantity or weight(kg)	⑮ Gross Weight	⑰Measure ment(cbm)
RS	1	RAIN SHOES (MAN, 280, RUBBER 100)	105 PR	21KG	1.2
	2	RAIN SHOES (MAN, 280, RUBBER 100)	95 PR	20KG	1.2
RS	3	RAIN SHOES (WOMAN, 240, RUBBER 100)	110 PR	22KG	1.2
	4	RAIN SHOES (WOMAN, 240, RUBBER 100)	90 PR	19KG	1.2
RS	5	RAIN SHOES (BABY 120, RUBBER 100)	45 PR	11KG	0.6
	6	RAIN SHOES (BABY 120, RUBBER 100)	55 PR	12KG	0.6

[正] ‘모델·규격’ 별 박스번호 표시 ⇒ 검사대상박스 특정가능 ⇒ 수입통관 진행

※ 포장명세서는 포장박스별로 작성하되, 박스별 품명, 규격, 수량이 동일한 경우
“RS 1~2 RAIN SHOES(MAN) 200EA” , “RS 3~4 RAIN SHOES(WOMAN) 200EA” 등 기재 가능

[사례3] SHIPPING MARK 미표시

가. (포장박스) 쉬핑 마크가 2개 이상 존재



나. (포장명세서) ‘쉬핑 마크’가 정확히 표시되어야 함

PACKING LIST

① Seller			⑧ Invoice No. and date		
<기재 생략>					
⑪Shipping Marks	⑫ N o of Box	⑬ Goods description	⑭Quantity or weight(kg)	⑮ Gross Weight	⑰Measure ment(cbm)
	<u>1~8</u>	PANTS (WOMAN, MAN, BABY) - COTTON 100%	500 EA	142KG	4

[誤] ‘품목별 쉬핑마크’ 미표시 ⇒ 검사대상박스 특정불가 ⇒ 보완필요

보완 後

⑪Shipping Marks	⑫ N o of Box	⑬ Goods description	⑭Quantity or weight(kg)	⑮ Gross Weight	⑰Measure ment(cbm)
<u>AA</u>	<u>1</u>	PANTS (MAN, COTTON 100%)	45 EA	17KG	0.5
	<u>2</u>	PANTS (MAN, COTTON 100%)	35 EA	13KG	0.5
<u>BB</u>	<u>3</u>	PANTS (WOMAN, COTTON 100%)	55 EA	18KG	0.5
	<u>4</u>	PANTS (WOMAN, COTTON 100%)	45 EA	14KG	0.5
<u>CC</u>	<u>5</u>	PANTS (BABY, COTTON 100%)	80 EA	20KG	0.5
	<u>6</u>	PANTS (BABY, COTTON 100%)	80 EA	20KG	0.5
	<u>7</u>	PANTS (BABY, COTTON 100%)	75 EA	18KG	0.5
	<u>8</u>	PANTS (BABY, COTTON 100%)	85 EA	22KG	0.5

[正] ‘품목별 쉬핑마크’ 표시 ⇒ 검사대상박스 특정가능 ⇒ 수입통관 진행

※ 포장명세서는 포장박스별로 작성하되, 박스별 품명, 규격, 수량이 동일한 경우
“AA 1~2 PANTS (MAN) 80EA” , “BB 3~4 PANTS(WOMAN) 100EA” 등 기재 가능

■ 관세사는 수입신고를 위해 수입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포장명세서가 부실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?

☞ 수출입자 당사자간 주고받는 포장명세서는 사문서로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포장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 이 경우, 관세사는 수입신고 전에 수입자 등에게 수출자로부터 적합한 포장명세서를 다시 발급받도록 안내 조치하거나,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등을 통하여 수입통관고시에 부합하는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

■ 부실한 포장명세서 제출시 세관은 어떤 조치를 하는지?

☞ 수입신고란 또는 모델·규격이 특정되지 않는 포장명세서가 확인되는 경우, 세관은 유니패스 전자문서로서 보완요구하고, 보완이 이행될 때까지 통관 절차는 정지

■ 어떠한 신고건에 적용하는지?

☞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의 서류제출 대상(수입검사 포함) 수입신고건은 모두 적용대상으로 인천항으로 반입된 LCL화물 뿐만 아니라 FCL화물도 반드시 고시에 부합하는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